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7. 1.(금) 조간 2022. 6. 30.(목) 12:00	배포 일시	2022. 6. 30.(목)		
담당 부서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책임자	과장	권혜나	(044-202-3070)
		담당자	사무관	이송열	(044-202-3072)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모집 시작

- 가입 대상 청년 대폭 확대('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 -
- 매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 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지원 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 보건복지부 박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 www.bokjiro.go.kr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붙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2. 질의응답

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카드뉴스 및 홍보 포스터

붙임 1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 (사업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세부 내용 >

사업 개요	(예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289억('22년 기준) (사업규모) 10.4만 명('22년 예산 기준) (사업시행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 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사업시행	(신청) '22.7.18~8.5 / (지원) '22.10월~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 가능 여부 >

구분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희망키움 통장 I (가구)	참여중	×		×		×	
	지급해지	×		○		○	
	일부지급해지	○(1회)		○		○	
	환수해지	○		○		○	
희망키움 통장 II (가구)	참여중	×		×		×	
	지급해지	○		×		○	
	환수해지	○		○		○	
내일키움 통장 (개인)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일부지급해지	○		○		○	○
	환수해지	○		○		○	○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일부지급해지	○(1회)		○		○	○
	환수해지	○		○		○	○
청년저축 계좌 (개인)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환수해지	○		○		○	○
희망저축 계좌 I (가구)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일부지급해지	○(1회)		○		○	○
	환수해지	○		○		○	○
희망저축 계좌 II (가구)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환수해지	○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인)	참여중	×	○	×	○	×	○
	지급해지	○	○	○	○	×	○
	환수해지	○	○	○	○	○	○

붙임 2

질의응답

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2.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여(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카드뉴스 및 홍보 포스터



지방에서 상경해 온 자취 중인
스물세살의 대학생 소연(가명)씨에게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아침자게 시작한 라함살이인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늘 쪼들리는 생활에
한숨이 늘었습니다.



한편, 29살의 현호(가명)씨는
창업 준비에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와 필요한 준비를 하며,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자에 생활비를 내다 보면
숨만 쉬어도 돈이 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계속 제자리걸음인 거 같아 고민입니다.



소연씨와 현호씨 같은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가 어디 없을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매월 적립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근로 청년까지
대상층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3년 뒤
현호씨는 스타트업을 설립할 수 있었고
소연씨는 공부에 집중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모든 현호씨, 소연씨를 응원합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한 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720만원~1,440만원에 이자까지 지급!

2022.7.18~8.5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내용 통장 가입자가 한 달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3년 내 교육 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창업 청년



구분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시행	'22.7월	'22.7월
근로여부	일반시장	O
	자활근로	O
연령 요건	만 15~39세	만 19~34세
가입대상	생계	X
	의료	X
	주거·교육	X
	차상위	X
본인적립금	월 10~50만원	
정부 지원	30만원(1.3 매칭)	10만원(1.1 매칭)
3년후 평균 수금액	1,44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 홈페이지 www.bokjiro.go.kr